

BK21플러스사업 규정 해석 개선사항 안내

【'17. 12. 15(금), 인재양성지원팀】

- (국외 출장 시 여행자보험료 및 비자발급비)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 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참여인력들의 혼란 방지

현 행	개 선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☞ 국외출장시 여행자보험료 및 비자발급비는 개인성 경비로서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☞ 국외출장시 여행자보험료 및 비자발급비는 - 주관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이 있을 시, 해당 기관 여비규정 준용하여 집행 가능 - 주관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이 없을 시,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하여 집행 가능

- (국내 외부전문가 활용 경비 집행 비목 단일화) 국내 외부전문가 활용 경비는 사업단운영비(학술활동지원비)에서만 집행 가능하도록 해석 명확화

현 행	개 선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☞ 국내 외부전문가 초빙 시, 관련 경비 지출 비목 세분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국제화경비)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(규정 상,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충족)에 초빙되는 국내전문가 활용비용- (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) 산학 협력과 관련 창업 및 취업지도를 위한 국내 전문가 활용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☞ 국내 외부전문가 초빙 시, 관련 경비 지출 비목 단일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사업단운영비) 국내 외부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비용은 행사의 성격과 연계된 비목이 아닌 사업단운영비(학술활동지원비)에서만 집행 가능